

AI대학 학생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숭실대학교 AI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설치)

본회는 숭실대학교 AI대학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자주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대학 문화를 창출하며, 대학인으로서의 인성 함양과 학문탐구를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민족의 자주와 화합을 다질 민족정신을 배양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숭실대학교 AI대학과 IT대학 AI융합학부 및 소프트웨어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준회원으로서 휴학 기간 동안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단, 회원 1/1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③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⑤ 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⑥ 회원은 학생회비 납부의 책임을 진다.
- ⑦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구성)

본회는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로 구성된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집행위원회
3. 산하기구: 학과(부) 학생회, 소모임연합회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특별기구

제7조 (특별기구)

- ① 본회는 활동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8조 (적용 범위)

- ① 본 회칙은 본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하며, 총학생회칙을 제외한 모든 기구의 회칙 중 가장 상위 세칙으로 한다.

- ② 별도의 회칙 또는 세칙이 없는 기구의 경우에는 상위 회칙을 따른다.
- ③ 각 기구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위 기구의 회칙을 따른다.

제2장 정 · 부학생회장

제9조 (지위)

-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소모임연합회를 총괄한다.
- ② 학생회장은 회원의 자율적인 학술활동과 원활한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 ③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권위 및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 ① 정 · 부학생회장은 충실파대학교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준하여 선출한다.
- ② 정 ·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해당 연도 2학기 종강일 익일부터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하며, 임기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 ③ 정 · 부학생회장은 다음 해 정 · 부학생회장 당선인 공고 후부터 해당 학기 종강일까지 인수인계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 의장,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 소모임연합회 의장이 된다.
- ②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소모임연합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생회장은 본회 및 회원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학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 ④ 학생회장은 본회의 예 · 결산을 집행할 수 있다.
- ⑤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의 각 임원을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다.
- ⑥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별기구를 구성 및 설치할 수 있다.
- ⑦ 학생회장은 기타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⑧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시 학교 측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자료의 쓰임이 다했을 때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⑨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⑩ 정 ·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⑪ 정 · 부학생회장은 후임 정 · 부학생회장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대행)

- ① 정 ·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거나 모두 권위 시에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학생회장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
- ② 권한대행의 임기는 차기 당선자 공고 직후까지로 하며 임기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 ③ 권한대행의 세부사항은 총학생회칙 제14조에 따른다.

제3장 학생총회

제13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14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5조 (의장)

- ① 의장은 AI대학 학생회장이 맡으며 대외적으로 학생총회를 대표한다.
- ② 학생총회의 진행은 의장이 맡는다.
- ③ 학생회장 유고 시 부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정 · 부학생회장 결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정 · 부학생회장의 탄핵 결정에 관한 학생총회는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기능 및 권한)

-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② 학생총회는 정 ·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결정권을 갖는다.

제17조 (소집 및 일정)

- ① 학생총회는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학생회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학생총회 소집은 개회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공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 ④ 학생총회의 일정 변경은 회의 소집 24시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학생총회는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할 시 바로 재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 ⑥ 특수한 국가적 상황으로 대면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방식을 채택한다.

제18조 (안전상정)

- ① 정 · 부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 7일 전까지 안전을 상정한다.
- ②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전을 상정할 수 있다.
- ③ 상정된 안전은 소집 공고 시에 같이 공고한다.

제19조 (의결)

- ① 학생총회는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 · 부학생회장의 탄핵 결정을 위한 학생총회는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진행 아래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학생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시에는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총투표

제20조(지위)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권한)

총투표는 학생총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22조(투표권)

본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투표권을 가진다.

제23조(일정 및 방법)

- ① 총투표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 ② 총투표에 관한 시행 및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총투표 일정은 총투표 시행일 7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학생회장이 단독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24조(안건상정)

- ① 운영위원회는 총투표 7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 ②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연서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③ 제27조 제4항의 경우 단학대회의 안건을 그대로 상정한다.
- ④ 상정된 안건은 소집 공고 시 같이 공고한다.

제25조(의결 및 공표)

- ① 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성사되며,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투표의 결과는 총투표 종료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공표한다.

제5장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제26조 (지위)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단학대회)는 학생총회를 제외하고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27조 (구성)

- ① 단학대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1. AI대학 정 · 부학생회장
 2. 학과(부) 정 · 부학생회장
 3. 각 학년 대표(각 반대표와 학과(부) 대표를 모두 대표자로 인정한다.)
 4. 해당 학기에 등록을 마친 AI대학 정 · 준 소모임 회장
- ② 단학대회 구성원 결위 시에는 재적 대표자에서 제한다.
- ③ 단학대회 구성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단학대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자는 재적위원에 포함한다.

제28조 (의장)

- ① 의장은 AI대학 학생회장이 맡으며 대외적으로 단학대회를 대표한다.
- ② 단학대회의 진행은 의장이 맡는다.
- ③ 학생회장 유고 시 부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정 · 부학생회장 궐위 시 운영위원회로부터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기능 및 권한)

단학대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집행위원회 임원 인준
2. 본회의 총노선 및 주요 사업 승인권
3.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의결권
4. 정 ·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5. 집행위원회 임원에 해임 인준
6. 회칙 개정 발의권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
7. 학생회장 및 집행위원회 임원의 출석 요구권
8. AI대학 학생회 회비 징수권
9.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10. 특별기구 위원장의 인준
11. 기타 단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30조 (소집 및 일정)

- ① 단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연 2회로 할 수 있다.
- ③ 임시회의는 재적 대표자 1/3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단독으로 소집한다.
- ④ 단학대회의 소집은 개회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공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전과 안전에 대한 설명

제31조 (안건상정)

- ① 정 · 부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회는 소집 3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 ② 재적 대표자 1/5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32조 (의결)

- ① 단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 ·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소추의 경우 재적 대표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단학대회 외의 세칙에 따른다.
- ④ 단학대회를 개최할 수 없을 시에는 총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3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상임 의사 결정기구이다.

제34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정·부학생회장 및 학과(부) 정·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단, 학생회장 유고 시 해당 단위의 부학생회장이 대행)
-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35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맡는다.
- ③ 학생회장 유고 시 부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정·부학생회장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기능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계획 및 조정
2. 본회의 예산안 심의 및 조정
3. 본회의 결산안 심의
4. 집행위원회 업무 진행 조정
5.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6. 단학대회 소집 요구권
7. 회칙 개정 발의권
8. AI대학 소모임 등록 심의 및 의결
9. AI대학 소모임 징계안 심의 및 의결
10. 총투표 관련 제반 사항 결정
11. 단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의결

제37조 (소집 및 일정)

-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38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각 단위의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집행위원회

제39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0조 (구성)

본회의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임명하며, 각 부서(국)별로 구성된다.

제41조 (업무 및 권한)

-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사업 및 예산의 집행
 2. 본회의 사업계획안 및 예·결산안 편성 및 작성
 3. 기타 집행위원회의 업무
 4. AI대학 소모임 등록 심사
 5. AI대학 소모임 지원금 심사
 6. AI대학 소모임 및 가등록 소모임 정계안 발의

제8장 학과(부) 학생회

제42조 (구성)

학과(부) 학생회는 해당 학과(부) 학생회칙에서 정의하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43조 (학과(부) 정·부학생회장)

학과(부) 정·부학생회장은 해당 학과(부)를 대표하며, 각 학과(부) 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44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과(부) 학생회의 업무 및 권한은 해당 학과(부) 학생회의 학생회칙에 따른다.
- ② 해당 학생회의 회칙이 없을 경우 본회의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9장 소모임연합회

제45조 (업무 및 권한)

소모임연합회의 업무 및 권한은 AI대학 소모임 세칙에 따른다.

제10장 선거

제46조 (선거의 방법)

본회의 선거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로 한다.

제47조 (선거권)

선거권은 AI대학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48조 (피선거권)

- ① 본회의 정·부학생회장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학과(부) 정·부학생회장의 자격은 해당 학과(부) 재학생으로서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해당 학과(부) 재학생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9조 (시행세칙)

- ①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AI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② 부학생회장이 없을 경우 학생회장 단독 출마가 불가능하다.
- ③ 각 학과(부) 정 · 부학생회장 자격은 AI대학 학생회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11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0조 (지위 및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본회의 최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구로서 본회의 정 · 부학생회장, 각 학과(부) 정 ·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후보자는 선관위가 될 수 없다.
- ② 선관위 위원장은 현 학생회장이 일임하고 현 학생회장이 일임할 수 없는 경우 현 부학생회장에게 위임한다.
- ③ 현 부학생회장 또한 일임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 내에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위임할 수 있는 자로 위임한다.
- ④ 상기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지닌다.
- ⑤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석 불가능할 경우 회칙에 의거 된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 (업무)

- ① 선관위는 정 · 부학생회장의 후보자 등록 시작일 7일 전까지 각 학과(부) 정 · 부학생회장 후보 등록 공고를 내야 하며, 공고 기간은 공고를 낸 날부터 7일간으로 한다.
- ② 후보자 등록 기간 중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며, 자격 미달인 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지지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

제12장 재정

제5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5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회의 정 · 부학생회장의 임기와 일치한다.

제54조 (예산 편성 및 심의)

예산은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하여 학생총회 또는 단학대회를 통해 심의를 받는다.

제55조 (예산 관리 및 집행)

학생회비의 관리는 회계 관리에 준하며 그 인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제56조 (운영비)

운영비는 이전 AI대학 학생회에게 이월 받은 금액과 당해 연도 들어온 학생회비를 합한 금액의 10% 이하로 책정한다.

제57조 (이월금)

본회는 이전 AI대학 학생회에게 이월 받은 금액과 당해 연도에 들어온 학생회비를 합한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다음 AI대학 학생회에 이월한다.

제13장 회칙 개정

제58조 (발의)

본회의 회칙 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단학대회 재적 대표자 1/5 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발의
3. 본회의 재적위원 1/10 이상의 발의

제59조 (의결)

① 본회의 회칙 개정은 단학대회 대표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단학대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② 단학대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총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60조 (공포)

학생총회, 단학대회 또는 총투표에서 회칙 개정 후 의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14장 세칙 개정

제61조 (내용)

본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규정한다.

제62조 (발의)

본회의 세칙 개정은 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한다.

제63조 (의결)

① 본회의 세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단학대회 또는 총회가 우선한다.

-부칙-

제1조 (공포 및 발표)

본회의 회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갖는다.

제2조 (기타)

본회의 이외의 사항은 다음 각항을 따른다.

- ① 총학생회칙이나 통상 시 민주적 관례에 준하여 운영 및 집행한다.
- ② 각종 시행세칙에 따른다.
- ③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단학대회에서 결정한다.

2025. 12. 23. 제정